

베트남 세법 안내
Vietnam
Pocket Tax Book
2020



www.pwc.com/vn

목차

| | |
|----------------------------------------------------------------------------|----|
| 조세 (Taxation) | 6 |
| • 일반사항 (General overview) | |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7 |
| • 세율 (Tax Rates) | |
| • 세제혜택 (Tax Incentives) | |
| • 과세소득 산정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 |
| • 손금불산입항목 (Non-deductible Expenses) | |
| • 결손금 (Losses) | |
|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 |
| • 이익배당금의 송금 (Profit Remittance) | |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12 |
| • 특수관계자 정의 (Related Party Definition) | |
| • 정상가격 결정방법 (TP Methodologies) | |
| • 이전가격 신고서식 (TP Declaration Forms) | |
| •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 |
| • 이전가격 조사 (TP Audits) | |
| • 실질과세 원칙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 |
| • 법인 간 용역비 부과 (Intercompany service charges) | |
| • 이자비용 손금인정 한도 (EBITDA의 20%) (20% of EBITDA cap on interest deductibility) | |
|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 |
|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 16 |
|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 |
| • FCT납부방식 (FCT Payment Methods) | |
| •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 |
|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21 |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22 |
|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 |
| •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not subject to VAT) | |
| • 면세 재화 및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 |
| • 세율 (Tax Rates) | |
| • 수출된 재화 및 용역 (Exported Goods and Services) | |
| • 부가세 산출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 |
| • 할인 및 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 | |
| • 자가사용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 |
|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 |
| • 부가세 환급 (Refunds) | |

| | |
|----------------------------------------------------------------------------------------------------------------------------------------------------------------------------------------------------------------------------------------------------------------------------------------------------------------------------------------------------------------------------|----|
| 베트남 세법 안내 2020 | |
| 세금계산서 발급 (Invoicing) | 2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Tax invoices) •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s) | |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3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가격 (Taxable Price) • 세액공제 (Tax Credits) • 세율 (Tax Rates) | |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33 |
| 재산세 (Property Taxes) | 34 |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 35 |
|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 3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Rates) • 세액산정 (Calculation) • 면세 (Exemptions) • 환급 (Refunds)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수입 시 부과 가능한 기타 세금 (Other taxes potentially imposed on imports) • 관세조사 (Customs Audits) | |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3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국 (Tax Residency) • 과세년도 (Tax Year) •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Non-employment Income) • 비과세 개인소득 (Non Taxable Income)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 소득공제 (Tax Deductions) • 세율 (PIT Rates)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 |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 44 |
| 기타세금 (Other Taxes) | 46 |
| 세무조사 및 가산세 (Tax Audits and Penalties) | 47 |
|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 48 |
| 별첨 1 - 조세조약 (Appendix 1 - Double Taxation Agreements) | 51 |
| PwC Vietnam이 제공 중인 서비스 (PwC Services in Vietnam) | 54 |
| PwC Vietnam Korean Business Services 담당자 연락처 안내 (KBS Contacts) | 57 |
| PwC Vietnam 담당자 연락처 안내 (Contacts) | 58 |

A summary of Vietnam taxation

당 세법 정보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세법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 정보는 베트남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업 및 개인마다 다른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과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조세 (Taxation)

일반사항 (General overview)

대부분의 베트남 내 경영활동 및 투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법인세
- 외국인계약자세 등 다양한 원천징수세
- 지분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베트남인 및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조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수출관세
- 환경보호세
- 토지임차료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세율 (Tax Rates)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한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일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각 사업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32%부터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 위치에 따라 40%에서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Tax Incentives)

세제혜택은 법으로 정하여진 투자장려분야, 투자장려지역 및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 확장 프로젝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과거에 별도의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못한 확장 프로젝트 포함)도 2015년부터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 인수로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투자가 장려되는 분야에는 교육, 건강보전,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환경보호,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개발, 농수산물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가 포함됩니다.
- 우선적인 개발이 장려되는 산업재를 제조하는 제조업 기업의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i. 제품이 하이테크 법률상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제품에 해당), 또는
 - ii. 제품이 의류, 섬유, 신발,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 등의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
- 투자가 장려되는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지구 및 첨단기술지구, 특정 산업단지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총투자자본이 6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i.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연 매출액 10조 VND 달성, 또는
 - ii.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고용인원 3,000명 달성
 - ✓ 총투자자본이 12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관련 법률들에 따라 장려기술로 등록된 기술을 이용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이 창출된 이후, 15년간 특혜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와, 수익 창출 이후 10년간 특혜세율 17%가 적용되는 2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특혜세율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혜세율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표준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정한 경우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15%의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의 사회적 사업 업종(예컨대, 교육사업, 의료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10%의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혜세율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조세면제와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제혜택 대상 활동으로부터 최초로 과세소득 (other income은 제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일정 기간동안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고, 해당기간 경과 후에는 적용 세율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가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이 창출된 이후 3년 이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익년도인 4번째 연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조세면제/감면이 개시됩니다. 조세 면제와 감면에 해당하는 조건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제조, 건설 및 운송사업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다수의 여성직원 또는 소수민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낮은 법인세율을 포함한 특정의 세제혜택들이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충족 필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인세 정책 결의안이 작성되었으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결의안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15%부터 17%까지 감면하고, 중소기업 설립 직후 시작되는 2년 간 법인세 면제와 같은 다양한 조세면제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 장려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타소득(Other income)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단, 폐기/처분과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허용)

과세소득 산정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소득 = 총수익(국내, 해외 원천 불문) - 손금인정되는 비용 + 기타 소득

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소명하는 조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입항목 (Non-deductible Expenses)

비용 항목 중 수익 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 (청구금액이 2천만 VND 이상인 거래시 은행 계좌이체증명서 포함)가 뒷받침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개별노동계약서, 단체노사협약서, 혹은 사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직원 보수지급 관련 비용
- 월평균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 포함). 의무적이지 않은 의료 및 상해 보험(Non-compulsory insurance)도 직원 복리후생비로 간주됨

-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한) 연금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으로 종업원당 월간 3백만 VND를 초과하는 금액
- 적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적립된 R&D 관련 충당금
- 노동법상 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거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해외기업의 본사에 의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배부된 간접비용 중 규정된 매출액 기준 배부방식 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법정 자본금의 미납입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 배를 초과하는 비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 EBITDA의 20%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이자. 최근, EBITDA의 20% 공제 한도를 30%로 완화하는 것이 제안됨
-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공사 충당금으로서 법규정을 위배하여 적립한 경우
- 외화표시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 교육, 의료보전,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이자
-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용역비

보험사, 증권사, 또는 복권 사업자 등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사업자는 손금이 인정되는 R&D 펀드 설정이 허용되며, 연간 세전이익의 10% 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동 R&D충당금은 지정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비용 집행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결손금 (Losses)

납세의무자는 세무상 결손금액을 향후 최장 5개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익)은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손실)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부문간 통산 허용).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도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결납세의무나 동일 기업그룹사 내 손실의 공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중간예납의 분기별 신고는 더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대신에 기업들은 추정에 따라 (신고 없이) 분기별 중간예납을 납부하면 됩니다. 분기별 중간예납이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액의 80%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중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분 지급기한으로부터 계산하여 지연지급이자 (현재 연간 약 11%)가 부과되게 됩니다.

최종 법인세 신고는 연간으로 수행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번째 달의 말일까지 신고/제출되어야 하며, 법인세 부채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타 Province에 종속적인 회계 단위(지점 등)를 가진 납세의무자는 지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회사들은 종속적인 제조 설비들이 위치하는 각 지역들의 지방세무서들에 법인세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총 지출액에서 각 제조설비로 인해 발생한 지출 비중을 기초로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표준 과세연도는 역년(1~12월)입니다. 만약 회사가 역년과 다른 과세연도(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익배당금의 송금 (Profit Remittance)

외국 투자자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베트남 내 투자의 종료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피투자회사가 이월결손금 상태인 경우 이익배당은 불가합니다.

외국 투자자 또는 피투자회사는 이익배당금의 송금 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이전까지 과세당국에 송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TP”)

Decree 20/2017/ND-CP는 2017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고 2017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Circular 41/2017/TT-BTC는 2017년 4월 28일에 제정되었으며, 동일하게 2017년 5월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Decree 20과 Circular 41은 전반적으로 OECD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및 BEPS Action Plan의 개념과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들은 베트남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정의 (Related Party Definition)

Decree 20에서 특수관계자가 되기 위한 지분 보유 기준은 25%입니다. 또한 양사 간 매출/매입이 전체 매출/매입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았던 종전의 특수관계자 정의는 Decree 20 하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정상가격 결정방법 (TP Methodologies)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OECD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율방법(CPM or TNMM)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신고서식 (TP Declaration Forms)

이전가격 신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내용, 사용된 정상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연도별 신고를 포함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상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 (또는 자발적인 조정 수행)을 요구합니다. Decree 20은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 관련 손익의 하향조정(Downward adjustment)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ecree 20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에 대한 손익의 구분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납세자는 Local File과 Mater File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신고서식 작성도 요구됩니다. 이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이 과세당국에 제출되기 전에 이러한 Local File 및 Master File 관련 정보가 준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전가격 신고서식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Decree 20은 납세자가 Decree 20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목적으로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베트남 내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가격 신고서식에 해당 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TPD)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매년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TP Documentation을 작성/구비하여야 합니다. Decree 20은 다국적 기업의 영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3단계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 (CbCR) 입니다. 이러한 3단계의 이전가격 문서화는 원칙적으로 연간 법인세신고 제출시점 이전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납세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해당 연도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 내 거주자이고 한 회계연도 동안 전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18조 VND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베트남 내 최상위 모회사가 CbCR의 작성 및 제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베트남 자회사는 최상위 모회사의 CbCR의 사본을 구비하고 과세당국의 요청 시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TPD) 작성이 면제됩니다. (Decree 내 TPD 외 다른 규정들은 면제되지 아니함)

-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500억 VND 미만이면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총 금액이 300억 VND 미만; 또는
-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협상이 타결되고 연간 APA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또는

- 매출이 2,000억 VND 미만이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업종에 따라 특정한 이익율(EBIT/매출) 조건을 달성하는 납세자 (유통업 5%, 제조업 10%, 임가공업 15%)

이전가격 조사 (TP audits)

최근 몇년 간 이전가격 조사 실시 건수에 있어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교한 조사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회사의 이전가격 문서화에서 인용된 비교대상회사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Decree 20은 실제 그룹 내부거래에서 가치의 창출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특히 법인세법상 손금인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전가격문서화(TPD)는 그러한 특수관계자 거래를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법인 간 용역비 부과 (Intercompany service charges)

Decree 20은 법인 간에 부과된 용역 비용의 손금 인정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 납세자는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들이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용역비 계산 방법의 합리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내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효익 또는 추가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법인 간 용역 (예를 들어, 베트남 납세자의 기능과 중복된 본사의 용역, 주주/본사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등)의 비용 부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자비용 손금인정 한도 (EBITDA 의 20%) (20% of EBITDA cap on interest deductibility)

Decree 20은 총 이자비용의 손금 인정에 대하여 EBITDA의 20% 한도를 제시합니다. Decree 20이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및 관계 기업들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가이드하고 있지만, EBITDA 기준 20%의 한도 규정은 특수관계자 뿐 아니라 제 3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납세자는 과세당국들과 일방의(unilateral), 쌍방의(bilateral), 다자간의(multilateral)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세청 (GDT)은 몇몇 납세자들에 대한 첫번째 쌍방APA를 타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해외 당국과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외국인 계약자세 (이하 FCT)는 베트남에 소재한 계약 주체(외국인 투자기업 포함)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해외의 법인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CT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VAT)와 법인세 (CIT)의 조합 또는 외국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로 구성됩니다.

FCT의 지급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비용, 서비스비용, 리스료/임차료, 보험료, 운송서비스비용, 증권의 매매로부터의 수익,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로부터의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통 방식의 경우 FCT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기업을 고용/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재화가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이후 재화와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베트남 내 유관 용역 수행이 없어야 함).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기타 용역 (예: 수리, 교육, 광고, 판촉 등)의 경우도 역시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 (Dividends)

외국법인주주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에 따른 송금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자 (Interest)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에 대하여 5%의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특정 외국 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역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관련 조세조약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면세채권 제외)과 해외법인에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지급도 5%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료 (Royalties)

사용권,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 등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FCT가 적용됩니다.

FCT납부방식 (FCT Payment Methods)

외국인계약자는 FCT 납부방식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 -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 공제법 (Deduction Method)

공제법 적용시 외국인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인 계약자들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임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2일 초과 소요됨
- 베트남 회계시스템(VAS)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가 발급됨

베트남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20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가 공제법에 따라 FCT를 납부할 것임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하여 FCT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외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공제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계약자는 공제법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방법 2 - 직접법 (Direct Method)

직접법 (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허용됩니다.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CT 신고 방식에 있어 별도의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방법 3 - 혼합법 (Hybrid Method)

혼합법은 외국인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즉,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부분은 총 매출액에 ‘직접법’하의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혼합법을 채택하기 위한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임
- 182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베트남에서 영업을 수행함
- 재무부(MoF)의 지침 및 회계규정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관리함

직접법 하 FCT 적용 세율 (FCT Rates under Direct method)

‘직접법’ 하에서 특정 경우들에 적용되는 주요 FC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간주 부가세율(2) | 간주 법인세율 |
|-------------------------------------------------------------------------------------------------------------------------------------------|------------|---------|
| 베트남 내 재화 공급 또는 재화 공급시 유관서비스 제공 - 베트남 내에서만 재화가 이동하는 수출-수입거래 -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 - 판매자가 베트남 내에서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Incoterms 형태의 재화 인도를 포함 | 면제 (1) | 1% |
| 용역 | 5% | 5% |
| 식당, 호텔 및 카지노 운영 용역 | 5% | 10% |
|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용역 | 5% | 2% |
|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 3% | 2% |
| 운송 | 3%(3) | 2% |
| 이자 | 면제 | 5% |
| 로열티 | 면제(4) | 10% |
| 증권매매 | 면제 | 0.1% |
| 파생상품 | 면제 | 2% |
| 기타활동 | 2% | 2% |

- (1) 부가세 면세 재화이거나 수입 시 수입부가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 (2)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제공되는 재화 및/또는 용역의 공급은 1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임.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5%의 부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3) 국제 운송의 경우 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임
- (4)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 의 이전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 기타 로열티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상표권 등 일부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사례가 일부 지방국세청에서 제기된 바 있으므로 주의 필요)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법인세 원천징수는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당국 간 상호합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합한 조세조약상 내용에 근거하여 법인세 인정세율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5%의 법인세 원천징수는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에 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정부는 한국을 포함하여 약 80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다수의 미체결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별첨 1]을 참조하십시오. 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많은 지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및 조세회피 방지(Anti-avoidance) 조항들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상의 조세감면/면제 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treaty shopping)이거나,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과 타방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적용은 배제됩니다. 동 지침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수취인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소득을 제3국에 주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1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수취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할 경우
- 수취인이 수취한 소득과 관련하여 영향력 또는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할 경우
- Back to back 계약 (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 수취인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수취인이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리인 혹은 중개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CAPT”)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 양도시 발생한 이득은 대부분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분양도소득세(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로 불리나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 (최초 매각의 경우에는 최초 법정자본금 출자액)과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액에서 지분양도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도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이 매각되는 베트남 회사가 지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분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관할 당국의 양도거래 공식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 거래에 있어 별도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양자가 지분 매각에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거래가격이 시장의 공정가치 수준이 아닌 경우 과세당국은 지분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양도가격 (Transfer price)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내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의 양도 뿐 아니라, 베트남 내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모회사의 베트남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해외법인에 의한 증권 (채권, 베트남 내 공개된 주식회사의 주식 등) 양도의 경우 ‘전체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매각자가 거주자인 베트남 내국법인일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 (“VAT Invoice”)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시 납부된 부가세의 적합한 증빙은 세금 납부 영수증 (Tax payment voucher)이며, FCT를 통해 납부된 부가세의 증빙은 FCT 지급 영수증 (FCT payment voucher)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where VAT declaration and payment are not required)

아래 제시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제외한 보상금, 상여금, 보조금
- 탄소배출권 판매 및 기타 금융수익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된 특정 용역 (예컨대, 운송수단, 기계장치 및 설비의 수리, 투자 및 무역거래의 관측, 광고, 마케팅, 해외 용역 및 재화 판매를 위한 중개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 가공만 거친 농산물의 판매
- 현물 자본 출자

- 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배상금 수령액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대금 회수만 수행할 경우 (예: A사가 B사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은 C사에 납부하며 이후 C사가 B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C사가 B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
 - 우편, 통신, 복권, 항공/버스/선박/기차 티켓 등을 원공급자(본인)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리인
 - 0% 부가세를 적용받는 국제 운송, 항공 및 해운 용역을 위한 대리인
 - 보험 대리점
-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받는 중개수수료
- 해외 구매자의 반품에 따라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재화

면세 재화 및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아래 열거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 특정 농산품
- 전년도 1억 VND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수입된 굴착장비, 비행기 및 선박류
- 토지사용권(LUR)의 양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나와 있음)
- 파생상품, 대출여신서비스 (신용카드발행, 금융리스업, 팩토링업 포함), 부가세 과세 대상인 담보부자산 (Mortgaged assets)의 매각(채권자 허가 하에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의 제공
- 펀드 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업 관련 업무
- 지분 양도
- 외환 거래
- 채권매매업
- 특정 보험서비스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 보험 및 재보험 포함)
-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용역
- 교육 및 훈련
-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 공공 버스에 의한 승객 운송 용역
-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전 (소프트웨어 해외수출은 0%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됨)
- 보석으로 가공되기 전 상태인 금괴 상태로 수입된 금
-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의 수출 및 가공된 제품 중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원가상 비중이 51%를 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에 이용되는 설비, 기계장치, 스페어 부품 및 특수한 운송장비와 필수 재료의 수입
-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해외 원조금 등 무상공여된 국제원조로 수입된 재화 (제한조건 있음)
- 비료, 가축/가금류/해산물 및 기타 동물용 사료, 농업에만 이용되는 기계 및 설비

세율 (Tax Rates)

부가세에는 다음의 세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 0% 동 세율은 ‘수출된 재화’에 적용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관세지역 및 수출가공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PE)에 판매된 재화, 수출을 위해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만 이동한 수출 (in-country export, 특정 조건 있음)을 위해 가공된 재화, 면세점으로 판매된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 (EPE)을 위해 제공된 건설/설치 용역, 항공·해운·국제운송 용역
- 5% 동 세율은 일반적으로 생필품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경제 영역에 적용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상수도,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 식재료,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사료, 다양한 농산품 및 농업서비스, 기술/과학 용역, 고무 라텍스, 설탕 및 그 부산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용역/제품 및 복지 주택
- 10% 표준 세율로서 위에 열거된 “부가세 대상 제외”, “면세”, “0%”, “5%”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특정 영업활동이 조세 조항에 열거된대로 분류되기 어려울 경우,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 범주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출된 재화 및 용역 (Exported Goods and Services)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 소재한 회사를 포함한 해외 법인에게 판매된 재화 및 직접적으로 제공된 용역은, 베트남 밖이나 무관세 지역 내에서 소비되었다면 0%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제 운송 용역을 제외한 수출된 재화 및 용역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예: 계약서, 비현금지급증빙, 통관신고서(수출 재화의 경우))

부가세 규정상 0% 부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용역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광고, 호텔서비스, 교육훈련, 오락, 관광안내 용역과,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 제공되는 다양한 용역(주택 임대, 직원들의 통근 운송, 특정 음식공급용역 등을 포함)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유통과 관련된 용역 등이 0%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산출 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부가세 산출 방법에는 공제방식과 직접계산방식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법 1 - 공제법 (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들을 보관하는 사업자 중 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 VND이상인 사업장
 - 공제방식의 부가세 신고를 자진하여 등록한 경우
- 부가세 납부세액의 산출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 매출부가세의 산출

매출부가세는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부과 과세가액에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해당시), 환경보호세(해당시)를 가산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분할대금 기준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할부액 대신 이자를 제외한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매입부가세의 공제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부가세를 처리합니다. 수입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세금납부영수증에 기초하여 매입부가세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언제든지 신고/환급될 수 있습니다. 2천만 VND 이상의 지급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는 은행을 통한 지급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즉, 외국인계약자세 FCT 체계 하에서 원천징수된 부가세)도 해당 납세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의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시 지급한 매입부가세는 환급/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이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하여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점과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 면세 및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활동에 사용된 매입 분에 해당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 직접법 (Direct method)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연간 매출이 10억 VND 미만인 사업장
- 개인 및 가내사업자
- 적합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및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으로서 투자법 (Law on Invest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 금, 은, 보석을 매매하는 사업자

- 부가세 납부세액의 산출

부가세 납부세액 = 판매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 x 부가세율

금, 은, 보석의 매매에서 발생한 음(-)의 부가가치는 동 기간에 발생한 양(+)의 부가가치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음(-)의 부가가치는 동일 역년 내에 후속 기간에 이월되어 상계될 수 있으나 차년도로 이월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선택한 부가세 신고 방식은 연속된 2년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할인 및 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

가격 할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감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내부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재화와 용역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더이상 매출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베트남에서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지점들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월별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전년도 연간 매출이 500억 VND 이하인 회사의 경우 매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분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VAT Refunds)

부가세의 환급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들에만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 대상액이 3억 VND를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이루어짐. 수출 매출과 관련된 매입부가세액의 경우 (VAT 환급조건 충족시) 수출 매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해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기업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VAT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들 중 영업 전 투자단계이면서 누적 부가세 공제액이 3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규정된 투자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들 또는 규정된 법정 자본금이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정 ODA 프로젝트, 외교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환급 대상이 아닌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래의 매출부가세를 상계하기 위해 해당 초과분을 이월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Invoicing)

세금계산서 (Tax Invoices)

현재, 베트남의 기업들은 세무서에서 사전 인쇄된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인쇄한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규정된 필수항목들을 포함해야 하고 지역 과세 당국에 등록 및 통지되어야 합니다. 수출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Commercial Invoice가 사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s)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식적인 시행령을 공개하였고, 본 시행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Decree 119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Circular 68/2019/TT-BTC가 2019년 10월에 공개되었으며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Decree 119와 Circular 68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고세무위험기업들”은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고세무위험 기업들은 자기자본이 150억 동 이하이고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들로 정의됩니다.

- 특수관계자 (동 책자에 포함된 정의에 따름)에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또는
- 일부 세금 신고 요구 사항들을 미준수, 또
- 새로운 장소에 대한 통지 또는 세금 신고 없이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위치를 2번 이상 변경, 또는
- 전년도 세금계산서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기업들.

“고세무위험기업” 지위는 12개월 후에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승인을 위해 재평가될 것입니다.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업들의 과세당국의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허용되는 산업들은 전기, 석유, 통신, 교통, 금융 기관, 보험,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업들과 같이 규제대상 경제 부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과세당국에 직접 전송하거나 공인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포털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포털과 연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전에 (인증코드 유/무에 관계 없이), 기업은 국세청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현 세금계산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며, 기업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도입 시기를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SST”)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비세입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수입된 재화 (다양한 형태의 석유 제품 제외)의 경우 수입단계와 국내유통단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가격 (Taxable Price)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생산자가 판매하는 경우/ 수입한 재화를 수입자가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입니다. 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가격을 추정할 것입니다. 수입된 재화의 과세가격은 통관시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생산되거나 수입된 재화가 후속적으로 유통업체에 의해 제삼자가 아닌 업체에게 판매될 경우, 특정한 경우들에 있어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따라 최저 과세가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Tax Credits)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원재료를 이용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시, 혹은 국내 생산자로부터 매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수입 및 판매 단계 모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내국 판매시점에서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율 (Tax Rates)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다음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공산품 - 담배, 술, 맥주, 24인승 미만의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석유, 소비전력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 카드놀이용 카드, 부적 등

2. 용역 활동 -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 및 베팅요소가 포함된 오락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서비스 | 세율 (%) |
|---------------------|----------|
| 시가/담배 | 75 |
| 스피릿 (증류주)/와인 | |
| 알콜 함유량 (ABV) 20% 이상 | 65 |
| 알콜 함유량 (ABV) 20% 미만 | 35 |
| 맥주 | 65 |
| 24인승 미만 자동차 | 10 - 150 |
| 배기량 125cc 초과 의 오토바이 | 20 |
| 비행기 | 30 |
| 보트 | 30 |
| 식유 | 7 - 10 |
| 에어컨 (90,000 BTU 이내) | 10 |
| 카드놀이용 카드 | 40 |
| 부적 | 70 |
| 디스코텍 | 40 |
| 마사지, 가라오케 | 30 |
| 카지노, 슬롯머신 등 | 35 |
| 베팅 요소가 포함된 오락 | 30 |
| 골프 | 20 |
| 복권 | 15 |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 용역과 재화의 추가 및 특별소비세율 개정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NRT”)

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천연 가스, 임산물 및 천연수(natural water) 등 베트남의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군에 부과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염전업에 사용되는 천연수 및 냉각 목적의 해수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천연자원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천연자원의 종류에 따라 1%에서 40%까지 범위의 다양한 세율이 있으며, 동 세율은 단위당 특정 과세가격으로 생산 물량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원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원의 과세가격의 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스 등은 일평균 생산량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Property Taxes)

해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요율의 범위는 지역, 기반시설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산업군에 따라 다양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대한 법률에 따라 토지세(land tax)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 세금은 사전 고시된 평방미터당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된 특정 토지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0.03%에서 0.15% 범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환경보호세(“EPT”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재화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번호 | 재화 | 단위 | 세율 (VND) |
|----|-----------------|----------|---------------|
| 1. | 석유, 디젤, 구리스 등 | litre/kg | 1,000-4,000 |
| 2. | 석탄 | ton | 15,000-30,000 |
| 3.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kg | 5,000 |
| 4. | 플라스틱 백(*) | kg | 50,000 |
| 5. |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 kg | 500-1,000 |

(*) 포장에 사용되거나,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인 소재인 경우 제외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수출입 관세의 세율은 빈번하게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도말에 업데이트되고 있음)

수입관세는 다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Preferential rates), 특별우대관세율 (Special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 (Most Favoured Nation, “MFN”)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MFN 세율은 베트남의 WTO 가입 조항에 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특별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베트남이 당사국으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ASEAN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호주-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라오스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베트남과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간 자유무역협정
- CPTPP 협정 (즉,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베트남 간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베트남은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즉, EVFTA)을 체결하여 시행되기 전에 양 측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트남은 현재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유럽 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베트남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이스라엘과의 FTA 를 포함한 기타 무역협정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대관세율이나 특별우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되는 재화에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우대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율 (MFN관세율에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세액산정 (Calculation)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몇가지 예외를 두고 WTO의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된 재화의 관세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치 (즉, 수입된 재화에 대해 지급된/지급될 대가로서 관세 부과대상 요소에 따라 조정)를 기초로 책정됩니다. 거래가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 대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관세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수입관세에 추가하여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적용됩니다.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한 적용됩니다.

면세 (Exemptions)

수입관세의 면제는 당해 프로젝트가 장려되는 분야/지역으로 분류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수입된 재화에 적용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장려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장비,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석유와 가스 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 장비, 특정 운송수단, 자재, 사무용품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수출된 재화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 소모품, 부품
- 수출품의 가공을 위해 수입한 자재, 소모품, 부품
- 국내 시장으로 수입될 때, 수입된 원재료나 부품의 사용 없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및 조립된 재화
- 특정 장려되는 프로젝트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입된 자재, 소모품, 부품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워런티,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수출된 재화

환급 (Refunds)

수입 관세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입관세가 지급이 되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은 재화
- 사용되지 않고 재수출되어야 하는 수입 재화
- 국내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지만, 해외 고객과의 임가공 용역계약을 통해 수출품 임가공에 사용한 수입 자재

수출관세 (Export Duties)

수출관세는 일부 항목에만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 및 고철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국경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선적지 항구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거래가치방법을 사용하여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사용하는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세가격이 산정되게 됩니다. 관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사한 수출품의 거래가격, 특정한 조정을 반영한 유사 재화의 국내시장 판매가격, 또는 해당 수출품에 대해 관세당국이 수집, 분류 및 조정한 판매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수입시 부과 가능한 기타 세금 (Other taxes potentially imposed on imports)

수입관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에 외에도 수입된 재화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세금이 존재합니다. 기타 세금에는 반덤핑관세 (anti-dumping tax), 세이프가드 관세 (safeguard tax) 및 상계관세 (anti-subsidy) 등이 포함됩니다.

관세조사 (Customs Audits)

과세당국은 사후 관세조사를 서면조사/방문조사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HS코드 분류, 과세가격, 수출 규정 및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 면제 제도 적정 준수 여부, 원산지 확인 등입니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거주지국 (Tax Residency)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과세 연도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재한 경우, 또는
-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영구/임시 거주증에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 또는 한 과세연도 동안 183일 이상의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자는 전세계(베트남 내외)의 모든 과세가능 소득에 대하여 (어디에서 지급하고 수령했는지를 불문하고)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거주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는 베트남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과세여부는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년도 (Tax Year)

베트남의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첫 입국일로부터 연말까지 베트남 체류가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 첫해에 한하여) 개인의 과세연도는 입국일로부터 첫 12개월 기간이며, 이후부터 과세연도는 1역년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금전적 급여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출장경비지급
- 통신료 지급 및 사무용품비

- 근무복(유니폼) 지급, 현금으로 지급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시간외근무수당 중 할증수당 지급액
- 1회성 거주이전비 지원 :
 - 베트남 근로자가 해외 근로를 위해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주할 때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할 때
 -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베트남으로 귀국할 때
- 출퇴근 비용 지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 베트남 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 직원교육훈련비
- 중식대현물지급비(현금 보상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예컨대, 시설회원권 사용료, 단체의료보험)
- 석유 및 자원 채굴 등 특정 산업에서 교대근무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항공료
- 누적된 납입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국내/해외 특정 임의보험계약에 대한 회사부담분 (예: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상기 비과세를 적용하는 데는 충족하여야 할 여러 가지 조건 및 제약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Non-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 외의 과세되는 개인소득은 다음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연간 1억 VND를 초과하는 임대 소득 포함)
-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1천만 VND를 초과하는 상속 소득
- 1천만 VND를 초과하는 상급/상품 (카지노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
- 1천만 VND를 초과하는 저작권/프랜차이즈/로열티의 이전 및 선물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비과세 개인소득 (Non Taxable Income)

비과세 개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 보험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보험 보상소득
- 사회보험법률(또는 해외의 동등한 규정) 하에서 수령한 퇴직연금
- 친족간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기인한 소득
- 친족간에 수령한 상속소득/증여소득
-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퇴직연금
- 해외 국적 선박이나 베트남 국적 국제 운항 회사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소득
- 카지노 상금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해외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해외법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Tax Deductions)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필수 보장 보험인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 종업원 부담액
2.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계약에 대한 납입액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한함)
3. 특정 허가된 자선단체에 대한 종업원 기여금
4. 각종 공제:
 - 인적공제 : 월 9백만VND
 - 부양가족 공제 : 월 3.6백만 VND/인, 부양가족공제는 자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공제대상 적격한 부양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율 (PIT Rates) 거주자 - 근로소득

| 연간 과세가능 소득 (million VND) | 월간 과세가능 소득 (million VND) | 세율 |
|-----------------------------|-----------------------------|-----|
| 0 - 60 | 0 - 5 | 5% |
| 60 - 120 | 5 - 10 | 10% |
| 120 - 216 | 10 - 18 | 15% |
| 216 - 384 | 18 - 32 | 20% |
| 384 - 624 | 32 - 52 | 25% |
| 624 - 960 | 52 - 80 | 30% |
| More than 960 | More than 80 | 35% |

거주자 - 기타소득

| 과세가능소득 종류 | 세율 |
|------------------|-----------------------------------|
| 사업소득 | 0.5%~5% (사업소득 업종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
| 이자(은행이자 제외) / 배당 | 5% |
|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 매각대금의 0.1% |
|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 순이익의 20% |
| 부동산의 양도 | 매각대금의 2% |
| 저작권 소득 | 5% |
|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 5% |
| 상금 소득 | 10% |
| 상속 / 증여 소득 | 10% |

비거주자

| 과세가능소득 종류 | 세율 |
|------------------------|---------------------------------|
| 근로소득 | 20% |
| 사업소득 | 1%~5% (사업소득 업종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
| 이자(은행이자 제외) / 배당 | 5% |
| 유가증권(주식) /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 매각대금의 0.1% |
| 부동산의 양도 | 매각대금의 2% |
|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 5% |
| 상속 / 증여 소득 | 10% |
| 상속 / 증여 소득 | 10%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개인소득세 신고코드 (Tax codes)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 코드(tax code)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직원이 등록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후속적으로 동 파일을 지역세무서에 제출),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 보유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별 신고의 경우는 근로소득 수령일 익월 20일까지, 분기 신고의 경우는 보고대상 분기의 익월 30일 까지 예납신고납부를 수행해야 하며,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년기준 납부액을 과세연도의 말일에서 90일 이내 (2020년 7월 1일부터 과세연도 말일에서 4개월로 연장됨)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베트남 과세가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근로소득 최종 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소득세가 성실히 납부/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간 납부된 내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 정산시 기존에 과다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tax code)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회사는 외국 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해당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지역 과세당국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보(이름, 소득 정보, 여권 번호 등을 포함)를 제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자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규정은 수령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한 시점에 비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한 임대소득은 제외).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 H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18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S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베트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 그룹 내에서 내부적으로 파견된 (예: 본사 근무 후 베트남 파견) 특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법정 정년 (남성: 60세, 여성: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I/HI/UI 보험료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SI(*) | HI | UI | Total |
|-----|-------|------|----|-------|
| 근로자 | 8% | 1.5% | 1% | 10.5% |
| 회사 | 17.5% | 3% | 1% | 21.3% |

(*) SI 보험료 구성 내역

| 사회보험(SI) | 회사 | 근로자 | 외국인에 대한 납부 의무 시행 |
|------------|------|-----|------------------|
| 질병 및 출산 급여 | 3% | - | 2018년 12월 1일 |
| 산업재해 급여 | 0.5% | - | 2018년 12월 1일 |
| 연금 및 유족 급여 | 14% | 8% | 2022년 1월 1일 |

SI/HI/UI 의 보험료 납부액 책정에 적용되는 소득은 급여, 특정 수당, 기타 정기적 지급액으로 하되, SI/HI 납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20배를, UI 납부액에 대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은 월 149만 VND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최저임금은 월 307만 VND에서 월 442만 VND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회사의 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SI/HI/UI 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공제 사항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인 연금상품 계약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소득세에서, 회사 부담분은 법인세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금 (Other Taxes)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기타 공과금 및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예로는 사업허가세(Business licence tax), 등록 가능한 자산의 이전시 발생하는 등록세(인지세와 유사)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가산세 (Tax Audits and Penalties)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수년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세무조사의 시기와 대상범위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세법 위반(tax offences)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행정벌로서의 가산세부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다양한 배수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의하여 적발된 (예: 세무조사 등) 차이에 대하여,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 0.03%의 연체이자(지연납부이자)가 부과됩니다.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2013년 7월 1일부터 유효) 가산세에 대해서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제척기간 적용 없이 언제나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회계 체계 (Accounting Framework)

베트남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현재 26개의 베트남 회계기준(VAS)이 있습니다. 동 기준들은 모두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발표되었으며, 각각 관련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기반으로 하되 베트남의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금융상품, 자산손상, 공정가치 등과 같은 주요 영역의 회계기준들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법 및 실무적용지침 (Accounting law and applicable implementation guidance)

베트남에서는 ‘회계법(Accounting law)’이 국회에서 발행한 가장 상위의 회계 규정입니다. 회계 이슈들은 다양한 결정문(decisions), 시행령(decrees), 시행규칙(circulars), 공문(official letters), 그리고 베트남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정됩니다.

베트남의 회계 체계는 주로 원칙 중심(principles-based)이라기 보다는 규칙 중심의(rules-based) 회계입니다. 베트남의 회계 체계는 특정 거래 관련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함께 표준 계정과목, 재무제표 양식, 회계 장부 및 증빙서 양식을 제공하는 ‘재무보고 매뉴얼’과 ‘장부 기장’으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및 투자 기금에 대한 산업별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 지침은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회계 기록 (Accounting records)

- 기준 : 베트남 회계 체계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 언어 : 회계기록은 베트남어로 구비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와 결합되어 구비될 수 있습니다.

- 회계기간 :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계기간은 12개월입니다. 신설 기업의 최초 회계기간은 인허가일자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최종 회계기간의 경우에도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통화 : 회계 기록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동 (VND) 기준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주로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는 기업은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통화를 기준으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재무보고의 경우, 다른 통화를 회계통화로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특정한 별도 규정에 따라 VND로 변환해야 합니다.
- 회계 문서화 : 회계 기록은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법인은 보관 목적으로 기록을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당국이 검사, 조사, 모니터링 및 감사를 위해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 회계서류를 인쇄하여 법정 대표자와 회계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인감 : 기업은 공식적인 인감의 형태, 수량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감의 관리, 사용 및 보관에 있어서 기업은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관 : 기업의 관리 또는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의 경우 5년 / 회계자료, 회계장부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의 미비는 VAS 미준수로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당국은 VAS 미준수를 법인세 인센티브의 철회, 비용의 손금불인정, 매입부가세 공제/환급 거부를 포함한 세액 재산정 및 가산세 부과와 같은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 보고 (Financial reporting)

VAS 하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의 변동내역 공시를 포함한 주석

각 기업은 회계법 및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장(chief accountant)을 임명해야 합니다. 연차 재무제표는 회계장 및 법정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 사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역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장기업 및 공기업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국제감사기준을 기초로 하고 베트남 상황에 맞게 일부를 조정한 47개의 감사기준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업들은 연차 재무제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구,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 공기업, 증권 거래 및 발행 기관, 상장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 국영기업,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및 국가예산으로 Group 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감사받은 연차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검토받은 중간 재무제표는 회계연도의 최초 6개월의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관련 인허가 당국, 재무부(MoF), 지방 세무서, 통계청 및 기타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의 30일 이전에 독립적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인 교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3년 연속으로 특정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명 공인회계사 교체 규정 외에도, 공기업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은 4년의 연속 감사 수행 후 교체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5년 연속 감사 수행 후 ‘회계법인’ 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별첨 1 - 조세조약 (Appendix I - Double Taxation Agreements)

각 국가간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주요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 No | 체결국 | 이자(%) | 로열티(%) | 주식참고 |
|----|-------------------|-------|---------|------|
| 1 | Algeria | 15 | 15 | 1, 2 |
| 2 | Australia | 10 | 10 | - |
| 3 | Austria | 10 | 7.5/10 | 2 |
| 4 | Azerbaijan | 10 | 10 | 2 |
| 5 | Bangladesh | 15 | 15 | 2 |
| 6 | Belarus | 10 | 15 | 2 |
| 7 | Belgium | 10 | 5/10/15 | 2 |
| 8 | Brunei Darussalam | 10 | 10 | 2 |
| 9 | Bulgaria | 10 | 15 | 2 |
| 10 | Cambodia | 10 | 10 | 1, 2 |
| 11 | Canada | 10 | 7.5/10 | 2 |
| 12 | China | 10 | 10 | 2 |
| 13 | Croatia | - | - | 1 |
| 14 | Cuba | 10 | 10 | - |
| 15 | Czech Republic | 10 | 10 | 2 |
| 16 | Denmark | 10 | 5/15 | 2 |
| 17 | Egypt | 15 | 15 | 1 |
| 18 | Estonia | 10 | 7.5/10 | - |
| 19 | Finland | 10 | 10 | 2 |
| 20 | France | Nil | 10 | - |
| 21 | Germany | 10 | 7.5/10 | 2 |
| 22 | Hong Kong | 10 | 7/10 | 2 |
| 23 | Hungary | 10 | 10 | - |
| 24 | Iceland | 10 | 10 | 2 |
| 25 | India | 10 | 10 | 2 |

| No | 채결국 | 이자(%) | 로열티(%) | 주식참고 |
|----|---------------|-------|----------|------|
| 26 | Indonesia | 15 | 15 | 2 |
| 27 | Iran | 10 | 10 | 2 |
| 28 | Ireland | 10 | 5/10/15 | 2 |
| 29 | Israel | 10 | 5/7.5/15 | 2 |
| 30 | Italy | 10 | 7.5/10 | 2 |
| 31 | Japan | 10 | 10 | 2 |
| 32 | Kazakhstan | 10 | 10 | 2 |
| 33 | Korea (South) | 10 | 5/15 | 2 |
| 34 | Korea (North) | 10 | 10 | 2 |
| 35 | Kuwait | 15 | 20 | 1, 2 |
| 36 | Laos | 10 | 10 | - |
| 37 | Latvia | 10 | 7.5/10 | 2 |
| 38 | Luxembourg | 10 | 10 | - |
| 39 | Macau | 10 | 10 | 2 |
| 40 | Macedonia | 10 | 10 | 1 |
| 41 | Malaysia | 10 | 10 | 2 |
| 42 | Manta | 10 | 5/10/15 | 2 |
| 43 | Mongolia | 10 | 10 | 2 |
| 44 | Morocco | 10 | 10 | 2 |
| 45 | Mozambique | 10 | 10 | - |
| 46 | Myanmar | 10 | 10 | 2 |
| 47 | Netherlands | 10 | 5/10/15 | 2 |
| 48 | New Zealand | 10 | 10 | - |
| 49 | Norway | 10 | 10 | 2 |
| 50 | Oman | 10 | 10 | 2 |
| 51 | Pakistan | 15 | 15 | 2 |
| 52 | Palestine | 10 | 10 | - |
| 53 | Panama | 10 | 10 | - |
| 54 | Portugal | 10 | 7.5/10 | 2 |
| 55 | Philippines | 15 | 15 | 2 |
| 56 | Poland | 10 | 10/15 | - |
| 57 | Qatar | 10 | 5/10 | 2 |

| No | 체결국 | 이자(%) | 로열티(%) | 주석참고 |
|----|----------------|-------|---------|------|
| 58 | Romania | 10 | 15 | 2 |
| 59 | Russia | 10 | 15 | - |
| 60 | San Marino | 10/15 | 10/15 | - |
| 61 | Saudi Arabia | 10 | 7.5/10 | 2 |
| 62 | Serbia | 10 | 10 | 2 |
| 63 | Seychelles | 10 | 10 | - |
| 64 | Singapore | 10 | 5/10 | 2 |
| 65 | Slovakia | 10 | 5/10/15 | 2 |
| 66 | Spain | 10 | 10 | 2 |
| 67 | Sri Lanka | 10 | 15 | 2 |
| 68 | Sweden | 10 | 5/15 | 2 |
| 69 | Switzerland | 10 | 10 | - |
| 70 | Taiwan | 10 | 15 | - |
| 71 | Thailand | 10/15 | 15 | 2 |
| 72 | Tunisia | 10 | 10 | 2 |
| 73 | Turkey | 10 | 10 | 2 |
| 74 | UAE | 10 | 10 | 2 |
| 75 | Ukraine | 10 | 10 | 2 |
| 76 | United Kingdom | 10 | 10 | 2 |
| 77 | United States | 10 | 5/10 | 1, 2 |
| 78 | Uruguay | 10 | 10 | - |
| 79 | Uzbekistan | 10 | 15 | 2 |
| 80 | Venezuela | 10 | 10 | 2 |

(자료 : 베트남 국세청)

Notes:

1. 아직 발효되지 않음 (Not in force yet)
2. 특정 정부기관에서 비롯된 이자수익은 원천세 대상에서 제외됨. 대부분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설정된 한도는 현재 적용되는 국내법상 세율보다 높으며, 따라서 낮은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당 책자 발간일 현재 세율 등의 내용이 공표되지 않은 조세조약입니다.

PwC Vietnam 이 제공 중인 서비스 (PwC Services in Vietnam)

PwC 베트남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1994년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약 1,000명이 넘는 베트남 직원 및 파견 직원들은 베트남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해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투자, 법률, 세무, 회계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wC 베트남은 주요 부처, 금융기관, 국영기업, 개인기업, 상업기구 및 ODA 관계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PwC베트남은 베트남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허가를 득한 법률 사무소를 2000년 설립하였습니다. 본점은 호치민에 있으며 하노이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 베트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서비스 (Tax Services) :

- 컨설팅 및 각종 세무신고 (Consulting and Compliance)
- 세무진단 서비스 (Tax health check services)
- 세무 분쟁 해결 (Tax dispute resolution)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세무실사 및 세무 구조화 (Tax due diligence and structuring)
- 개인소득세 서비스 (Payroll income tax / International assignment services)
- 급여업무 아웃소싱 (Payroll outsourcing)
- 이민 관련 서비스 (Immigration services)
- 세무조사 지원 (Tax audit assistance)
- 기술적 세무 솔루션 지원 (Tax technology solutions)

관세 및 국제통상자문 서비스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Services) :

- 컨설팅 및 각종 관세신고 (Consulting and compliance)
- 관세진단 서비스 (Customs health services)
- 관세 분쟁 해결 (Customs dispute resolution)
- 기술적 관세 솔루션 지원 (Customs technology solutions)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법률 자회사인 PwC Legal (Vietnam) Co., Ltd를 통해 제공) :

-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s)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 고용 및 인적자원 관련 서비스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 일반 기업 및 상사 관련 자문서비스 (General corporate and commercial services)
- 내부 투자 서비스 (Inward investor services)
- 각종 법률 신고/ 기업 비서업무 서비스 (Legal compliance / Company secretarial services)
- 법률 진단 서비스 (Legal health check services)
- 부동산 (Real estate)

딜 서비스 (Deal Services) :

- 거래 자문 (Transactions)
-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 기업가치평가 (Valuation)
- 사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ucturing)
- 부동산 및 자본 프로젝트 (Real estate & Capital projects)
- 기반 시설, 정부 공익 사업 (Infrastructure, Government & Utilities)
- 전략 (Strategy)
- 운전 자금 관리 (Working Capital Management)

컨설팅 서비스 (Consulting Services) :

- 금융 리스크 관리 (Financial Risk Management)
- 포렌직 서비스 (Forensics)
- 재무 자문 (Finance)
- 성과 관리 자문 (Performance Management)
- 오퍼레이션 자문 (Operations)
- 기술 자문 (Technology)
- 인사 및 조직 (People and organisation)
- 디지털 및 소비자 전략 (Digital and Customer Strategy)

인증업무 (Assurance Services) :

- 재무제표 감사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재무정보 검토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 합의된 절차 수행 (Custom Business Procedures)
- IFRS와 회계 컨설팅 서비스 (IFRS and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 사이버 보안 인증업무 (Cyber Security Assurance)
- 내부감사, 내부통제 서비스 (Risk assurance services) (Internal Audit, IT Assurance and Performance, Business Resilience, Business Control Advisory, Performance Assurance, etc.)
- 자본시장 서비스 (Capital Market Services)
- 회계자문/교육 (Technical accounting advice / training)

베트남 IPO 및 해외 상장 지원

해외기업 전담팀 (Country Desk Services)

- Korean Business Services (한국기업 전담팀)
- European Business Services (유럽기업 전담팀)
- Japanese Business Services (일본기업 전담팀)
- Chinese and Taiwanese Business Services (중국/대만기업 전담팀)

PwC Vietnam Korean Business Services 담당자 연락처 안내 (KBS Contacts)

호치민 Office : 손한희 한국공인회계사

전화: +84 28 3823 0796 (내선) 4611

휴대폰: +84 (0) 93 871 1193

E-mail: son.hanhee@pwc.com

PwC (Vietnam) Limited

8th Floor, Saigon Tower, 29 Le Dua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하노이 Office : 심진보 한국공인회계사

전화: +84 24 3946 2246 (내선) 1011

휴대폰: +84 (0) 90 324 0069

E-mail: shim.jinbo@pwc.com

PwC (Vietnam) Limited

1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Pham Hung Roa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PwC Vietnam 담당자 연락처 안내 (Contacts)

(필요하신 업무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ax | |
|---------------------------------------------------------------|---------------------------------------------------------|
| Mr. Nguyen Thanh Trung nguyen.thanh.trung@pwc.com | Ms. Dinh Thi Quynh Van dinh.quynh.van@pwc.com |
| Mr. Richard Irwin r.j.irwin@pwc.com | Ms. Nguyen Huong Giang n.huong.giang@pwc.com |
| Ms. Annett Perschmann annett.perschmann@pwc.com | |
| Global Mobility Services | |
| Ms. Brittany Chong brittany.chong@pwc.com | Ms. Hoang Thanh Binh h.thanh.binh@pwc.com |
| Transfer Pricing | |
| Ms. Monika Mindszenti monika.mindszenti@pwc.com | |
| Ms. Judith Henry judith.henry@pwc.com | |
| Customs Services | |
| Mr. Pham Van Vinh pham.van.vinh@pwc.com | Mr. Nguyen Hong Son nguyen.hong.x.son@pwc.com |
| Legal | |
| Ms. Phan Thi Thuy Duong phan.thi.thuy.duong@pwc.com | Mr. Le Anh Tuan tuan.le.anh@pwc.com |
| Ms. Eva Jaworska eva.jaworska@pwc.com | |

PwC Vietnam 담당자 연락처 안내 (Contacts)

(필요하신 업무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orean Business | |
|-------------------------------------------------------------|-------------------------------------------------------|
| Mr. Han-Hee Son son.hanhee@pwc.com | Mr. Jinbo Shim shim.jinbo@pwc.com |
| Japanese Business | |
| Mr. Shoichi Fukunaga shoichi.fukunaga@pwc.com | Mr. Shimpei Imai shimpei.imai@pwc.com |
| Ms. Etsuko Okawa okawa.etsuko@pwc.com | Ms. Yumi Ishii yumi.ishii@pwc.com |
| | Ms. Mai Ito mai.ito@pwc.com |
| | Ms. Risa Tsuchiya tsuchiya.risa@pwc.com |
| Chinese and Taiwanese Business | |
| Mr. Bee Han Theng (湯美漢 會計師) bee.han.theng@pwc.com | Ms. Lou Jingjing lou.jingjing@pwc.com |
| Ms. Ting Hock Yee ting.hock.yee@pwc.com | Mr. Hsu Tzu-Hsuan (Dylan) hsu.dylan@pwc.com |
| Mr. Yu Che Liao (Jason) yu.che.liao@pwc.com | |
| Mr. Tran Vi Cuong tran.vi.cuong@pwc.com | |

저희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메일로 수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Ms. Nguyen Thi Cat Tien (nguyen.t.cat.tien@pwc.com)

PwC Vietnam은 별도의 계열회사로 Law Firm인 PwC Legal (Vietnam) Co, Ltd.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객사에 세무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안내

호치민:

Floor 8, Saigon Tower
29 Le Dua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 28 3823 0796

하노이:

Floor 16, Keangnam Hanoi Landmark 72
Pham Hung Road, Nam Tu Liem District
Hanoi
Tel: +84 24 3946 2246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7 countries with more than 276,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

©2020 PwC (Vietnam) Lt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